

취업지원규정

제정 : 2014.05.01

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0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, 경력개발, 취업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 입학학생취업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3.10.16.>

제2조 <삭제 2020.03.01.>

제3조(조직) ① 입학학생취업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, 입학학생취업처장을 둔다. <개정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② 입학학생취업처장은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 통솔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③ 입학학생취업처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학학생취업팀을 두며,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④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진로전담교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>

제4조(입학학생취업처의 업무) 학생의 진로설계와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
1. 취업지원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운영 <개정 2020.03.01.>
2. 학생이력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<개정 2020.03.01.>
3. 취업전담 교수제 운영 <개정 2020.03.01.>
4. 취업률 향상 방안 계획수립 및 추진 <개정 2020.03.01.>
5. 취업률 통계 분석 및 현황 보고 <개정 2020.03.01.>
6. 취업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<개정 2020.03.01.>
7. 학생의 창업관련 프로그램 진행 지원 <개정 2020.03.01.>
8. 취업 관련 프로그램 질 관리(평가, 환류) <개정 2020.03.01.>
9. 취업을 위한 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<개정 2020.03.01.>
10. 기타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>
11. <삭제 2020.03.01.>

12. <삭제 2020.03.01.>

[제목개정 2023.10.16.]

제5조(취업정보지원) ① 입학학생취업처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간을 확보 취업정보검색 및 취업상담이 가능하도록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② 교내 홈페이지에 취업정보 자료를 제공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>

③ <삭제 2020.03.01.>

제6조(부서 및 학과 협조) 입학학생취업처는 대학 내 부서 및 학과와 학생취업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01., 2023.10.16.>

제7조(취업지원운영위원회) ① 입학학생취업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을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위하여 취업지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위원회의 구성, 기능 등 세부사항은 취업지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제8조 <삭제 2020.03.01.>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